## 의학과 운영 지침

- 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계명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및 교육과정, 연구장학제도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19. 9. 26.)
- 제2조(운영위원회) 학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학과 운영위원회를 둔다.
- 제3조(구성 및 임기)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학과장의 추천에 의해 대학원장이 위촉하며, 학과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.
  - ②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제4조(심의사항)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  - 1. 학위청구논문 관련 사항
  - 2. 장학에 관한 사항
  - 3.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
  - 4. 기타 학과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제5조(회의 및 사무)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6조(교육과정 운영) ① 석사학위과정의 교과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.
  - 1. 강좌개설은 학기당 기초공통과목 1강좌(3학점)와 각 전공과목 3강좌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- 2. 기초 공통과목은 학위청구논문 제출 전까지 3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
  - 3. 비동일계 출신자는 학과에서 정한 선수과목 9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.
  - 4. 선수과목은 학기당 6학점을 초과 신청할 수 없으며 그 성적이 B학점 미만일 때에는 재수강하여야 한다.
  - ② 박사학위과정의 교과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.
    - 1. 강좌개설은 학기당 기초공통과목 1강좌(3학점)와 각 전공과목 3강좌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  - 2. 기초공통과목은 학위청구논문 제출 전까지 3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
    - 3. 비동일계 출신자는 학과에서 정한 선수과목 9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.
    - 4. 선수과목은 학기 당 6학점을 초과 신청할 수 없으며 그 성적이 B학점 미만일 때에는 재수강하여야 한다.
- 제7조(연구장학제도) 학생들의 연구의욕 고취 및 연구지원인력을 활용 할 수 있도록 본학과의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장학제도를 시행 할 수 있다.

## 부 칙

- 1. 이 내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2. 이 개정지침은 201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.